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별표 6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제3호는 공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연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p> <p>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 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p> <p>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